



※ 이 감사결과는 감사당시 관계법령, 조례, 규칙 등에 의하여 수감된 내용으로 감사이후 관계법령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≡ 2018. 10. 15 ~ 10. 19 ≡

청산면사무소 정기종합감사 결과



완도군
(기획예산담당관)

I . 감사실시 개요

◆ 1 감사배경 및 목적

- 청산면은 2016년 10월 종합감사를 받은 이후 감사를 받지 아니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, 이에 업무전반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,
-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감사 실시

◆ 2 감사대상 및 범위

- 감사대상 : 청산면
- 감사범위 : 2016년 10월부터 2018년 9월말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

◆ 3 감사기간 및 인원

- 감사기간 : 2018. 10. 15. ~ 10. 19.(5일간)
- 감사인원 : 감사팀장 외 4명

◆ 4 감사중점사항

- 군수 지시사항 및 주요 민원처리 상황
-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
- 공사업무 설계·시공·준공검사의 적정성
- 민원업무 처리의 적정성 및 지방세 과세 누락사항
- 사회복지보조금 및 수당지급의 적정성
- 농지전용 및 사후관리, 각종 보조금지급 적정성 등

II. 감사결과

일반행정·민원분야 (4건)

① 출장 관외여비 부적정 지급에 관한 사항

- 출장 여비 지출시 영수증 미첨부, 운임비 과다지급 등 총 18건, 602,800 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하였으며, 개인별 지급내역과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야 하나 개인별 지급내역 없이 지급을 하는 등 출장여비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② 민원업무 처리 지연에 관한 사항

- 2016년 ~ 2018년도 각종 민원 904건을 접수 처리하면서 “결과입력지연” 등의 사유로 최소 1일에서 최대 16일까지 23건에 대하여 처리기한을 경과하여 지연 처리 하는 등 민원사무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③ 사무인계인수 미작성

- 2017.1.9일자 면장 및 담당직위가 있는 6급 담당 주사 인사이동부터 2018. 9. 4.일 담당급의 전보인사까지 7명(총무, 민원, 맞춤형, 개발, 농수산)에 대하여 사무인계인수서가 작성되지 않아, 군수지시사항 등 업무추진에 따른 책임한계가 불투명 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.

④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에 관한 사항

-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를 처리하면서, 이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이장의 거주여부 확인서 418건에 대한 거주 또는 비거주 표시가 되지 않았음 에도 아무런 보완 없이 접수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(유연근무제)

- 유연근무제 실시에 따른 조기 출퇴근자의 경우 출근시간만 등록하고 퇴근 시간은 미등록하는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세 입 (1건)

①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누락에 관한 사항

- 2017.05.10.일 창고를 건축한 후 기간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청산면 국산리 방00 외 총12건 878,960원이 과세 누락(취득세)
- 청산면 부흥리 지00 외 11건은 신고 후 사실상 가설건축물(저온저장고)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건물에 대한 재산 변동신고의 점검 소홀로 재산세 76,460원 과세 누락(재산세)
- 청산면 부흥리 지00 외 12건은 2017. 5. 08.부터 감사일 현재까지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면서, 13건/117,000원의 과세 누락(등록면허세)

복지 (1건)

① 경로당 및 경로복지센터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소홀

- 보조금 정산서류를 분기별로 취합하여 각종 증빙자료를 5년동안 보관하여야하나 정산서류를 방치하고 있으며, 정산결과를 토대로 매년 회계연도 마감후 2개월이내 정산결과를 군에 보고하여야하나 정산서류 확인없이 정산결과를 보고하였으며,
- 또한, 2016년도와 2017년도 하반기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하게 지출된 보조금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통보하여야 하나 이행

하지 않는 등 ‘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’와 ‘경로당 운영비 집행 지침’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 운영에 대해 지도·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농림·수산(2건)

①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소홀

- 농기계 구입 즉시 공급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기계 관리상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농가에 방문하여 농기계 활용 여부 및 관리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나 농기계 관리대장은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한번도 점검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②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대상자 선정 소홀

-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야함에도 신청인에게 관련서류를 제출받는 등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대상자선정 업무를 소홀이 추진한 사실이 있다.

공사계약 (1건)

① 건설공사 시공물량 부족 및 정산소홀

- 군외 대창1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2건의 부족 시공된 1,685,000원에 대한 감액 또는 재사공 요구 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등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업무 소홀.

건설행정 (4건)

① 건설공사 감독소홀 및 공사비 과다 집행

- 규모어항(호안도로) 정비공사 외 8건의 부족 시공된 시설공사 계 4,550,000 원에 대한 감액 또는 재시공 요구 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등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② 건설공사 도급업체 선정 부적정

- 청산 구장 호안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외 2건(발주한 사업이 1천5백 만 원 이상이므로 전문건설업종)이 해당됨에 따라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하는데도 해당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.

③ 시설공사 감독, 검사 공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

- 청산 진산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6건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내용이 건축, 기계, 토목공사이므로 시설직 공무원을 공사 감독·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함에도 시설직 공무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을 부적정하게 공사 감독 · 검사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감독 소홀로 건설공사의 품질 저하 우려 및 현장관리 소홀로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

④ 시설공사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

- 청산면사무소 직원관사 보수공사외 2건 대하여 시설공사 대가를 지급하면서 847천 원을 정산없이 대가를 지급하는 등 산재 및 고용보험료 사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